

등록번호	건축과-23360
등록일자	2014.10.23.
결재일자	2014.10.24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공공시설물팀장	건축과장	환경도시국장		
강남규	윤학병	한봉구	10/24 여장권		
협 조	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예산팀장 나윤수				

공공시설공사 관리체계 개선 계획 세부시행방안



서 대 문 구
건축과

공공시설공사 관리체계 개선 계획 세부 시행방안

『공공시설공사 관리체계 개선계획』에 따라 협의체운영 등 사업진행에 필요한 세부시행방안을 마련코자 함.

1

공공시설공사 개선방안

■ **관련근거** : 공공시설공사 관리체계 개선계획(구청장방침 건축과-22348호, 2014.10.14)

■ 개선방향

- 『공공시설물의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체』 구성
- 주관부서와 감독부서의 업무범위 결정
- 시설물 운영업체의 조기선정 및 사업계획에 참여
- 사업협의체에 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감독의뢰 반려

2

세부시행방안

■ 사업협의체 구성

- 시기 : 사업계획수립시 즉시 구성 및 회의록 작성
 - 사업시행에 대한 적정성검토 및 관계자 의견 검토
- 내용
 - 참여대상 : 주관부서, 감독부서, 운영업체,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
 - 협의내용
 - 대상토지(또는 건축물)의 적합성 검토
 - 사업예산 산출 : 추정 예산
 - 관계 법령검토 : 건립가능 규모, 공사방법 등 협의
 - 사업진행 방향 모색 : 공사기간 및 입주시기 등
 - 공사내용 협의 : 마감자재, 색상, 재질 및 용도에 따른 특수시설 등

○ 결과

- 사업계획 초기단계부터 사업협의체구성 및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는 공사감독 의뢰 반려
- 관계자 및 부서간 의견은 사업협의체에서 결정

부서간 업무범위 결정(처리흐름도)

주 관 부 서	사업협의체 운영	건 축 과
<p>사업계획 수립 시행 →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계획수립 시행 	<p>사업계획</p> <p>↓</p> <p>설계용역</p> <p>↓</p> <p>실시설계</p> <p>↓</p> <p>공사시행</p> <p>↓</p> <p>준공</p> <p>↓</p> <p>시설물유지관리</p>	<p>사업계획 검토 협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요예산 및 관계법령 검토
<p>설계용역 발주 시행 →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설계용역발주 시행 		<p>← 설계감독업무 시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용역계획 수립
<p>공사발주업무 협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사발주 		<p>← 설계감독업무 시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설계서작성에 따른 전반적 업무수행 <p>← 공사감독업무 시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사계획 수립
<p>완공시설물 인수 →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하자업무 수행 		<p>← 공사감독업무 시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준공감독조서 작성
		<p>← 공사감독업무 시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하자점검시 기술지원 업무 협조

○ 주관부서 : 행정처리업무 수행

○ 건축과 : 설계 및 공사 등 기술적업무 수행

○ 정책기획담당관 : 예산팀

- 사업예산 편성시 시설비(공사비)에 대한 적정예산 산출 등 건축과의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며, 검토되지 않은 예산편성 요청시 반려

■ 운영업체의 사업계획 참여

- 사업 진행중 뒤늦은 업체 선정시, 용도에 따른 특수시설 및 개인적 취향에 따른 색상·마감자재 및 평면구성등 설계변경 사항 발생이 발생하므로 사업계획 초기단계에서부터 운영업체를 참여시켜 의견 반영

3

행정사항

■ 시설물 관리부서(발주부서)

- 최초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예산편성 및 집행, 공사계획 수립, 관계자의견 검토 등 사항에 대하여 사업협의체를 통한 의사 결정 및 사업집행

■ 정책기획담당관(예산팀)

- 공공시설물의 사업계획 수립방침 추진시 건축과 의견반영여부 확인 요청

■ 사업계획 초기부터 사업협의체가 운영되지 않은 사업은 공사감독요청 반려.

끝.